

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629

제출년월일 2000.12.12

제 출 자 파주시장

□ 제안이유

지방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음악예술의 적극적인 육성보급을 위하여 파주시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단원의 남·여 제한을 없애고 단원등의 자격과 전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파주시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가. 합창단의 정원은 남·여 제한없이 지휘자, 부지휘자 및 반주자를 제외하고 60명 이내로 하며, 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원중에서 단장, 총무 각 1인을 두도록 함.(안 제2조)
- 나. 단장은 합창단원 중에서 선출하여 시장이 위촉하며,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함.(안 제4조)
- 다. 지휘자, 부지휘자 및 반주자는 음악과 관련된 분야의 정규대학이상 학력소지자, 합창단의 지휘 또는 반주경력이 있는 자, 음악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중 특별전형에 의해 위촉하며, 위촉기간은 2년으로함.(안 제5조)
- 라. 단원은 만20세이상 45세이하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시민중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함(안 제6조)
- 마. 단장등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와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, 특별한 사유없이 행사 또는 연습에 불참한 경우 및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음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
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

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파주시 합창단(이하 “합창단”이라 한다)의 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합창단은 단장, 지휘자, 부지휘자, 반주자,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합창단의 정원은 남·여의 제한없이 지휘자, 부지휘자 및 반주자를 제외하고 60명이 내로 한다.

③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원중에서 단장, 총무 각 1인을 둔다.

제3조(임무) ①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며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총무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,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물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③단원은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음악발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.

④합창단의 공연활동은 문화체육과장이 총괄한다.

제4조(단장의 자격 및 위촉) ①단장은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.

②단장은 합창단원중에서 선출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지휘자·반주자등의 자격 및 위촉) ①지휘자, 부지휘자 및 반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음악과 관련된 분야의 정규대학이상 학력소지자
2. 합창단의 지휘 또는 반주 경력이 있는 자
3. 음악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

②지휘자, 부지휘자 및 반주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자로 특별전형에 의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제6조(단원의 자격 및 위촉) ①단원은 파주시 지역내에 거주하는 자중 만20세이상 45세이하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시민으로 한다.

②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제7조(전형방법) 단원의 선발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서류심사와 실기시험 및 면접 시험으로 하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.

제8조(단원등의 해촉) 시장은 단장·지휘자·부지휘자·반주자·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
2.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
3. 특별한 사유없이 행사 또는 연습에 불참한 경우
4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음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

제9조(공연 및 연습) 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및 공연을 위한 연습을 실시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공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이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파주시여성합창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·소		문화체육과 ☎ 940-4351
입 안 자	문화체육과장	박 재 홍
	문화예술담당	신 동 주
	담 당 자	백 희 순

파주시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[1997. 3. 12] 조례 제167호]

개정 1999.12.31 조례 제303호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파주시여성합창단(이하 “합창단”이라 한다)의 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99. 12. 31)

제 2 조(구성) ①합창단은 합창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과 지휘자,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합창단의 정원은 단장 및 지휘자, 반주자를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한다.

③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간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제 3 조(임무) ①단원은 여성으로서 품위와 재능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.

②암원은 원활한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단장을 보좌하며 활동한다.

③문화체육과장은 합창단의 공연예술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제 4 조(단원의 자격) 단원은 파주시 지역내에 거주하며 연령은 만20세이상 4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하며, 성악을 전공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. 다만,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.

제 5 조(단장) ①단장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운영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한다.

③단장 유고시에는 지휘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(위촉) ①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.

②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실기 및 면접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지휘자와 반주자는 특별전형에 의해 위촉한다.

③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위촉일자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(추2)

④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자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 7 조(단원의 해촉) 단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파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
2.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
3. 특별한 사유없이 월3회 이상 또는 년10회 이상 정기연습에 불참하거나 공연 참가 특별연습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
4. 단원의 연령이 만 45세를 넘은 경우
5.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

제 8 조(공연 및 연습) 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및 공연을 위한 연습을 실시한다.

제 9 조(사례비 등)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비와 공연에 필요한 의상구입비 및 연습시 실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0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